

August 18, 2015

최근 특별사면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해제조치

이에 따라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입찰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이 2015. 8. 14.자로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2015. 8. 14.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고 공표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2015. 8. 14. 이전에 입찰공고된 건설공사 입찰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이 해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래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던 건설업체가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2015. 8. 14. 이전에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가급적 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및 그 관련 집행정지신청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과 관련하여, ① 2015. 8. 13. 이전에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② 2015. 8. 13. 이전에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받았으나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및 ③ 2015. 8. 14. 이후 일정기간 동안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가 이번 해제조치의 대상에 포함됩니다(그러나 2015. 8. 13. 이전의 담합행위가 2015. 8. 13. 이후에 적발되는 경우는 이번 조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건설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가능합니다). 위 ③의 '자진신고한 업체'에 자진신고 순위에 따라 혜택을 받는 신고자(즉, 1순위 또는 2순위 신고자) 외에도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들이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추후 관련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고된 이후에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부처는 2015년 8월 말경에 합동으로, 해제범위, 시행기준, 효과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한 '행정제재 해제조치 세부시행지침'을 공고할 예정인바, 따라서 이번 조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위 공고를 계속 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철 대표변호사	TEL. 02 316 4629	E-Mail. ycyim@shinkim.com
● 박주영 선임외국변호사	TEL. 02 316 4692	E-Mail. jyoungpark@shinkim.com
● 조창영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631	E-Mail. cycho@shinkim.com
● 이창훈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645	E-Mail. chlee@shinkim.com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